

## 2024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신청 공고

청년 대상 어촌 정착 동기 부여 및 어업 신규인력 유입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「2024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」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명: 2024년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
2. 사업기간: 2024. 3. ~ 12. (예정)
3. 신청기간: **2024. 1. 15.(월) ~ 2. 5.(월)/ 21일간**
4. 신청대상 ※ 세부 자격사항 붙임 참조
 

인턴	· '24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미만의 3개월간 미취업자 및 청년 귀어 희망인
채용대상자	· 관내 소재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(설립 후 6개월 이상)
5. 지원내용: 영어취업 희망 청년이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 인턴 근무할 시 월 보수의 일부 지원 (최소 2개월~최대 6개월)
6. 지원액: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, 월 보수의 50% ※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
7. 제출서류
 

인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신청서(인턴용) 및 신분증 1부.</li> <li>· 가족관계증명서 1부.</li> <li>· 정보제공동의서 1부 .</li> <li>·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.</li> <li>· 수산고, 수산대 졸업증명서 1부(해당자).</li> <li>·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1부(해당자).</li> </ul>
채용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신청서(채용대상자용) 및 대표자 신분증 1부.</li> <li>·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이행 협약서 1부.</li> <li>· 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.</li> <li>· 법인등기부등본 1부(법인만).</li> <li>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</li> <li>·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(2022년) 1부.</li> <li>· 어업경영체증명서 1부</li> <li>·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.</li> <li>· HACCP 또는 친환경 인증 증빙자료 1부.(해당시)</li> <li>·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상 경력 증빙자료 1부.(해당시)</li> </ul>
8. 접수처: 통영시청 수산과 수산행정팀(☎055-650-5013)

2024년 1월 15일

**통 영 시 장**

## **붙임** 사업자 자격요건 및 우선순위 등

### 1. 신청자격 및 요건

#### ○ 인턴 대상자(청년 어업인)

- 2024년 1월 1일 기준,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
-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\* 및 귀어 희망하는 자
  - \* 직장가입자 탈퇴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자
- 채용대상자와 계약한 근무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가능한 자
- 대학생인 경우, 방학 기간 내 단기(2개월)로 인턴 참여 가능한 자

#### ○ 채용 대상자

##### - (어업법인)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 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
- 법인 사무소의 소재지가 관할 시군 내 설립한 어업법인
-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어업법인

##### - (선도 어가)

- 선도 어가로서 수산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및 고용자의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
- 어업 기반 소재지가 관할 시군 내 위치한 선도 어가

#### ※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, 선도 어가로 정의

-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자
- 수산업경영인 중 우수경영인\* 선정자
  - \* 전업경영인, 선도우수경영인 포함
- 동종 수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수산인

## 2. 우선순위 선정

### < 인 턴 >

- ① 수산 관련 학교 졸업생(예정자)
- ②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창업예정자로 선정된 자
- ③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(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국가공인 자격증)
- ④ 연령이 낮은 자

### < 채용대상자 >

- ① 청년 어업인이 대표인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
- ② HACCP 또는 친환경 등의 인증을 취득한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
- ③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대표자
- ④ 전년도 총 매출액이 높은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

## 3.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
\* "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"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

### ○ 인턴 대상자(청년 어업인)

-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(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 인건비 지원) 지원대상자
- 최근 3년 이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
-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취업 중인 자
-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
- 어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(이사, 감사 등)과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
- 「낙시관리 및 육성법」 제25조에 따른 낙시어선업 분야 신청자

### ○ 채용 대상자

-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
- 최근 3년 이내 고의적 지참 위반 및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, 지원금 반환 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
-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등 부정적 사례가 있는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
-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

## 4. 지원조건

- 채용대상자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% 이내(월 100만원 한도)로 연간 최대 600만원(최대 6개월)까지 지원
  - \* 단, 최소 2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인턴대상자는 수산업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

## 5. 인원 및 지원한도

- 인원한도 : 채용대상자는 사업 시행년도 최대 3명까지 가능
- 지원한도 : 1인당, 최대 월 100만원 한도 지원
- 지원기간 : 최소 2개월 ~ 최대 6개월  
(다만, 2개월 이내 청년의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재배치는 가능)
- 채용조건 : 4대 보험 가입 필수

## 6. 대상자 선정

- 인턴 대상자(청년 어업인) 선정
  - (시·군)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인턴 대상자 선정
    - 사업신청서는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·선정 권고
    -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도 자격요건 검토 실시
  - (채용대상자) 우수 인턴 대상자를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·군에 추천할 수 있다.
- 채용 대상자 선정 및 확보
  - 자격요건 검토 및 서류심사를 통해 인턴 채용이 가능한 채용대상자 선정

### < 매칭 우선순위 >

- ① 채용대상자가 희망하는 인턴대상자를 제시할 경우,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매칭
- ② 인턴의 희망 업종, 인턴 기간,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대상자를 3순위까지 매칭하며, 매칭된 채용대상자에게 인턴 추천 및 통보
- ③ 매칭된 채용대상자에게 인턴의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제공하여 매칭 여부 기회 제공
- ④ 우선순위에 따라 채용대상자 매칭 확정
  - \* 채용대상자의 대표자, 이사 등 인턴 간의 관계가 부모, 자녀 관계일 경우 매칭 불가
  - \*\* 다수의 인턴이 동일한 채용대상자를 희망할 경우, 채용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매칭

## ○ 인턴고용 및 계약체결

- 채용대상자는 인턴 추천 대상(3순위 이내)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면접 등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인선정 취소
  - \* 단, 자연재해 및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가 초과된 경우 제외
- 채용대상자는 추천받은 인턴의 면접 심사 결과, 채용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유에 대해 시군에 보고
- 채용대상자는 인턴의 면접과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간 내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채용에 필요한 별도 서류는 청년에게 요청 가능
- 인턴은 채용대상자 소속으로 채용하여야 하며,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 필수
  - \* 채용대상자는 사업장 내 인턴교육 책임자 1명을 필수로 정하여야 함
- 채용대상자는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채용 결과를 시군에 보고
  - 고용계약 기간은 최소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, 개월 단위로 계약
  - 채용한 인턴의 고용변동 발생 시, 변동 내역을 시군에 보고하고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신고서를 시군에 제출
  - 관련서류 : 사업운영 계획서, 근로계약서 사본,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

## 7. 지원형태

### ○ 채용대상자

- 선정된 인턴에 월별 급여 지급(채용대상자 통장 → 인턴 급여통장)
- 인턴 출근부 등으로 인턴 출결 관리(서식11)
- 인턴이 작성한 인턴활동일지(서식11)를 서명·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익월 10일까지 시군으로 제출
- 출근부, 인턴활동일지 미작성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
#### < 관련 증빙서류 >

- ① 채용지원금 신청서(서식 5), ② 월별업무확인서(월별 출근부 사본 포함)
- ③ 인턴의 급여지급 대장 사본, ④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
- ⑤ 4대보험 지급 사본, ⑥ 급여지급 증빙자료(인턴명의 급여 통장사본 등)
- ⑦ 계좌이체 의뢰서(서식 6), ⑧ 사업자등록증 ⑨ 법인통장 사본

### ○ 인턴(청년어업인)

- 출근부에 본인 서명 등 출결 관리에 협조
- 인턴일지를 작성하여 채용대상자에게 제출·확인 필수
- 채용대상자와 계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

## 8. 선정 취소

- 인턴 추천대상(3순위 이내 인턴대상자)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사유 없이 채용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용대상자
-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고의적인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사실이 있는 채용대상자
- 근로계약서 상 의무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, 채용한 인턴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용대상자
- 시군의 관련 서류 미흡에 따른 시정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은 인턴 또는 채용대상자
-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인턴 또는 채용대상자

## 9. 지원금 환수 및 사업참여 제한 등

- 채용대상자가 시행지침,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즉시 사업 중지,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 이내 사업신청 제한
  - 임금지급 의무사항 및 유급휴가, 수당 등 지급 의무 미이행
  -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으나,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
  - 그 외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인턴 본인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사업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사업 중지, 향후 사업참여 금지 및 지원금 전액 환수